

유연근무에 관한 규정

제정: 2020년 10월 1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원의 유연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유연근무라 함은 근무시간을 선택·조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, 시차출퇴근제, 탄력근무제, 보상휴가제 등으로 구분한다.

1. 시간출퇴근제: 주 35시간, 1일 7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되, 출·퇴근 시간의 구간을 미리 정하여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탄력근무제: 1주간 35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되, 특정 주의 35시간, 특정 일의 7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3. 보상휴가제: 근로자가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하는 경우,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4. 재택근무제: 업무상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유연근무의 신청 및 승인) ① 유연근무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유연근무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서(별지 1)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총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총무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총무처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근무를 실시한다.

③ 유연근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.

1. 신청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
2. 유연근무제로 변경하려는 사유

제4조(유연근무의 해지) 직원의 유연근무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유연근무 기간의 종료로 해지된다. 다만, 직원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 직권으로 유연근무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는 경우
2. 근무태만이나 조직화합 저해행위를 하는 경우
3. 영리행위 등 신청 목적에 맞지 않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

제5조(시차출퇴근제 운영방법) ① 시차출퇴근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 유형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.

1. 출·퇴근시간: 08:00~16:00
2. 출·퇴근시간: 09:00~17:00

3. 출·퇴근시간: 10:00~18:00

제6조(탄력근무제 운영방법) ① 탄력근무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.

1. 1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평균 1주간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특정 주의 35시간, 특정 일의 7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2시간 초과해서는 안된다.

2. 4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평균 1주간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특정 주의 35시간, 특정 일의 7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, 특정일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
② 탄력근무제 시간 중 통상적인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저녁시간(18:00~19:00)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업무 특성에 따라 점심 및 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탄력근무제 기간 중의 휴가·공가·병가 시에는 해당 일을 7시간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보상휴가제) 직원이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유연근무제 신청서

[시차출퇴근형, 탄력근무형, 재택근무형]

부서명		직급	
성명			
주요업무 (사무분장업무)			
근무유형 선택(○)	근무기간	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	
시차출퇴근형	년 월 일 - 년 월 일	월요일	시 ~ 시
		화요일	시 ~ 시
수요일		시 ~ 시	
목요일		시 ~ 시	
탄력근무형		금요일	시 ~ 시
재택근무형			
※재택근무형 선택시 사무실 근무요일			
신청사유	[별첨서류가능]		
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
위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부서장 (서명 또는 인)			